# 이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안)

## 1. 主要 法的根據

□ 의료보험법 제9조(자격취득의 시기)

. 제2항 : 지역 피보험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얻는다.

- 제1호 : 당해 지역에 조합이 설립된 날 또는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지역에 거주하게 된 날
- 제3호 :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의료보호 대상자이었던 자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 의료보험법 제10조(자격상실의 시기)

. 제2항 : 지역 피보험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자격을 얻는다.

- 제1호 : 사망한때
- 제3호 : 당해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때
- 제6호 : 의료보호 대상자로 된 때
- 제8호 :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료보호를 받게 된 자로서 이 법에 의한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된때

□ 의료보험법 제49조(보험료)

. 제3항 : 지역조합의 보험료액은 피보험자가 속하는 세대의 소득수준 및 피보험자의 수등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등급 구분에 의하여 조합정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의료보험법 제75조(자료의 제공)

. 제1항 : 보험자 및 연합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등에 대하여 의료보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항 : 제1항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의료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지역피보험자의 자격취득 신고)

. 제1항 : 지역조합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세대주는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 세대의 구성원이 지역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지역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서에 보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 또는 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은 지역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의료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지역피보험자의 자격상실 신고)

. 제1항 : 지역조합의 조합원인 세대주는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세대의 구성원이 지역 피보험자의 자격을 잃은 때에는 그 자격을 잃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지역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조합 또는 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조합의 관할 지역에서 퇴거한 때에는 전입한 지역에서의 지역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로써 갈음한다.

## 2. 提案理由 및 檢討意見

o 지역의료보험은 국민의 질병, 부상, 분만 또는 사망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의료보험법에 의거하여 1988년부터 실시된 제도로서 주민등록을 근거로 하여 피보험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 산정을 위하여 소득, 재산에 관한 지방세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이용하고, 또한 피보험자 관리는 물론 관할 행정구역 읍·면·동사무소내 지역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여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o 이천시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안) 제2조(지원사항) 제1항 제3호 "의료보험 피보호자의 자격취득, 상실 신고업무가 적기에 이루워 질수 있도록 주민의 전·출입시 지소를 경유하도록 협조" 토록 된 것은

o 의료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지역 피보험자의 자격상실신고) 제1항에 규정에 명시된 사항과 같이 " 지역조합의 관할지역에서 퇴거한 때에는 전입한 지역에서의 지역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로써 상실신고를 갈음하고 있고,

o 주민등록법 제14조(거주지의 이동) 제2항 "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전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 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의 이송 요청을 하여야 한다."

o 주민등록법 제14조의 2(타 법령에 의한 신고와의 관계) " 주민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을 때에는 병역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민방위 기본법, 인감증명법, 생활보호법, 의료보험법 및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o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3조 3(거주지 이동에 따른 관계서류의 이송등) 제1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를 이송할 때에는 거주지를 이동하는 병역의무자, 향토예비군, 보훈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 대상자, 지역 의료보험 대상자 및 장애인의 관계서류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5조의 2 규정에 의한 인감대장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송부전을 이송 봉투에 함께 넣어 송부하여야 한다 " 와 같이 제반 규정상 전입신고서만으로 주거지 이동이 가능하여 주민이 지소에 경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 정부 민원행정 절차 간소화 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